KAPA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fa2026-0112
평가금액	2,119,572,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Fidelity 감정평가사사무소 / 이병문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6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Fidelity 감정평가사사무소 / 이병문	eyJhbGciOiJFUzI1NiIs	2026-01-20 14:28: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의 뢰 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2025-11827-A01)
감정서번호 :	fa2026-011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idelity 감정평가사사무소

fa2026-0112

(토지)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이병문 이병문 (인)

감정평가액	**이십일억일천구백오십칠만이천원정 (₩2,119,572,000.-)**			
의 뢰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제 출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조건	-	
물 건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2026. 01. 19	2026. 01. 19	2026. 01. 19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776.4	토지	776.4	2,730,000	2,119,572,000
		이	하	여	백	
	합 계					₩2,119,57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소재 '진해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의 공매(국세,지방세)를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1월 19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6년 1월 19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임대사항의 확인

① 미상임.

3. 기타 참고사항

① 본건 토지 북서측 일부에 후첨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적치물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토 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상업나지
	지 목	대
	면 적	776.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원/㎡)
1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776.4	대	상업나지	2종일주	중로한면	사다리 평지	1,34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2025년 공시지가(원/㎡)
A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9	762.7	대	상업용	2종일주	중로각지	사다리 평지	1,397,000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주거	-0.76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5.01.01~26.01.19) 2025.01.01 ~ 2025.11.30 : -0.515 2025.11.01 ~ 2025.11.30 : -0.153 (1 - 0.00515) * (1 - 0.00153 * 50/30) ≒ 0.99231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개별요인 비교

■ 상업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97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면도로의 상태 등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등	방 위		
		고 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97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토지	성숙중인 상가지대	중로변	2,500,000-2,900,000	2종일주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다) 본건 평가사례

일련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고
(1)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776.4	2종일주	대 상업나지	2023.03.08	공매 (NPL)	2,710,000	-
토지: 2,104,044,000원,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고
(2)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3**-*	495	2종일주	대 주상용	2025.08.01	조세	2,380,000	-
(3)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4**-*	7,037	2종일주	대 주거나지	2025.03.04	시가참고	3,270,000	-
(4)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	1,048.9	2종일주	대 상업나지	2024.12.31	자산재평가(IFRS)	2,510,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	2종일주 대/주상용	638,000,000원 (@ 1,760,000원/㎡)	2024.10.18 2006.03.09	265.9㎡ 263.74㎡	-
	의 견	1)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건물단가 : 1,000,000원/㎡ X 32년/50년 ≒ 640,000원/㎡ 건물가격 : 640,000원/㎡ X 263.74㎡ ≒ 168,793,600원 2) 토지가격 : (638,000,000원 - 168,793,600원) / 265.9㎡ ≒ 1,760,000원/㎡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경매 동향

용도별	경남 창원시 진해구 2025년 01월 ~ 2025년 12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토지	7,683,310,660	4,007,981,899	52.2	137	18	13.1

(출처 : 인포케어)

(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1] (원/㎡)	시점[2] 수정	지역[3] 요인	개별[4] 요인	산출단가[5]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2,380,000	0.9921	1.000	1.192	2,814,548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5] (원/㎡)	2.030	2.03
	1,397,000	0.99231	-	-	1,386,257		

[1]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2)을 선정함.

[2]시점수정(2025.08.01 ~ 2026.01.19,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역) : -0.79**%** (0.9921)

[3]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2)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4]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2)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행정적조건(표준지는 시가지경관지구임), 열세하나, 접근조건(상업중심 및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등), 환경조건(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 및 획지조건(형상, 접면도로의 상태 등) 우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상업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0.95	1.10	1.10	1.08	0.96	1.00	1.192

[5]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단가)(원/㎡)	비고
	일련번호	공시지가 (원/㎡)							
1	A	1,397,000	0.99231	1.000	0.970	2.03	2,729,678	2,730,000	상업지대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일련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14-5	2종일주 대/주상용	638,000,000원 (@ 1,760,000원/㎡)	2024.10.18 2006.03.09	265.9㎡ 263.74㎡	-
	의 견	1)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건물단가 : 1,000,000원/㎡ X -년/50년 ≒ 원/㎡ 건물가격 : 원/㎡ X 263.74㎡ ≒ 168,793,600원 2) 토지가격 : (638,000,000원 - 168,793,600원) / 265.9㎡ ≒ 1,760,000원/㎡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나. 사정보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주거	-0.6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4.10.18~26.01.19) 2024.10.01 ~ 2024.10.31 : 0.062 2024.11.01 ~ 2024.11.30 : 0.058 2024.12.01 ~ 2024.12.31 : 0.055 2025.01.01 ~ 2025.11.30 : -0.515 2025.11.01 ~ 2025.11.30 : -0.153 (1 + 0.00062 * 14/31) * (1 + 0.00058) * (1 + 0.00055) * (1 - 0.00515) * (1 - 0.00153 * 50/30) ≒ 0.99371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개별요인 비교

■ 상업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10	본건은 사례 대비 가로의 폭 등 우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1.20	본건은 사례 대비 상업지역중심 및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등 우세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30	본건 중로변 상업지대이나 사례는 후면 주택지대로서 본건이 환경조건 우세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98	본건은 사례 대비 형상 등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등	방 위		
		고 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0.96	본건은 시가지경관지구로서 사례 대비 행정적조건 열세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61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번호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시산가액 (단가)(원/㎡)
	일련번호	토지단가 (원/㎡)						
1	#1	1,760,000	1.000	0.99371	1.000	1.614	2,822,772	2,820,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4)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비고
1	2,730,000	2,820,000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어 수요성.환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2,119,572,000
	합 계	2,119,572,000

결정의견	공매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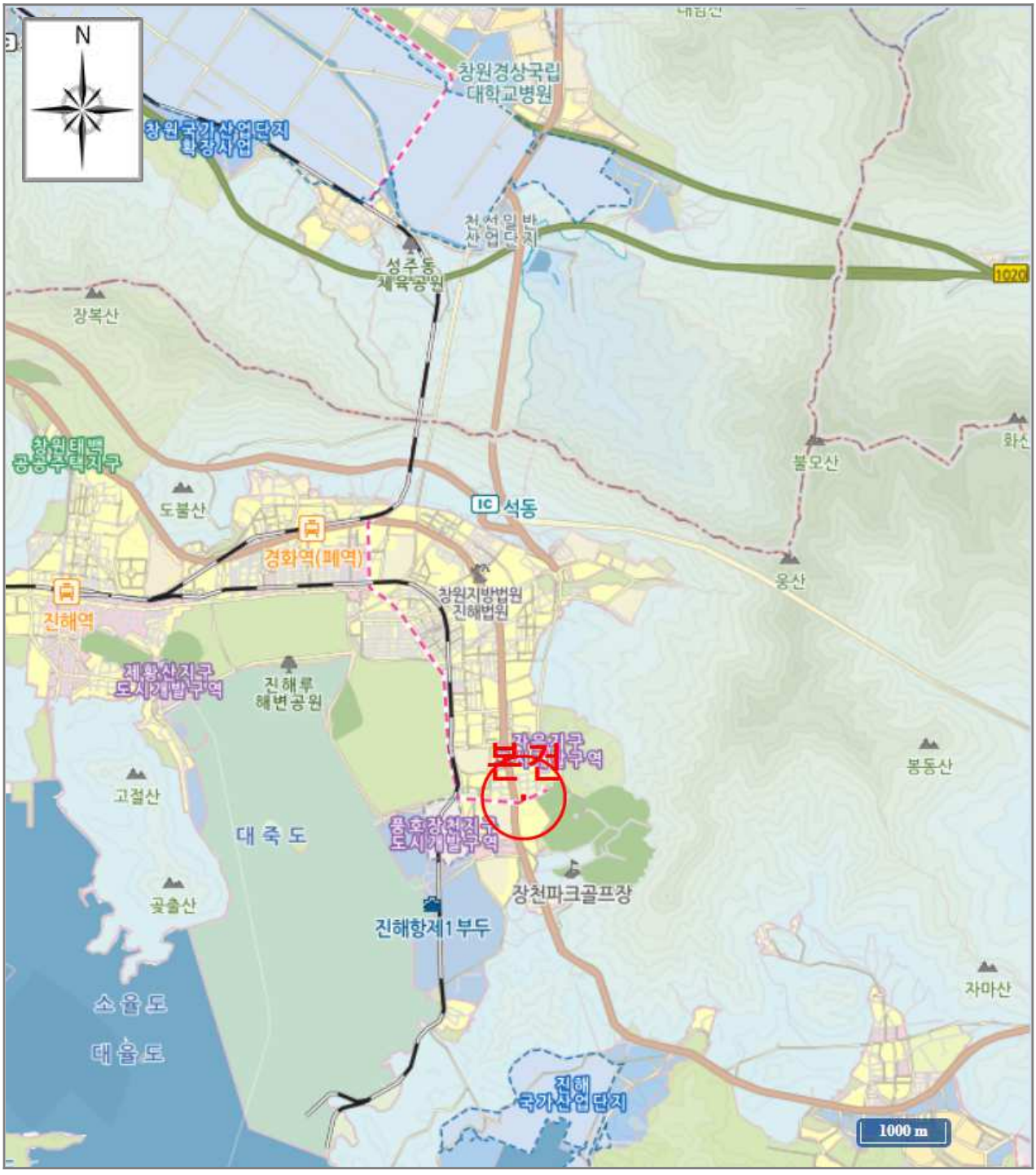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 공부	면적 (㎡) 사정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비고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76.4	776.4	2,730,000	2,119,572,000	
	소 계							**₩2,119,572,000**	
	합 계							**₩2,119,572,000.-**	
				이 하 여 백					

(토 지) 감정평가요항표

기 재 사 항	내 역
위 치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소재 '진해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함.
주 위 환 경	본건 부근은 진해구청,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 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형세 및 이용상황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나지 상태임.
도 로 상 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제시목록외의 물건 (구조 및 규모, 이용상태, 영향)	본건 토지 북서측 일부에 후첨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적치물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
임대사항	미상임.
기 타 사 항	-.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범 례] ■본 건 ■표준지 ■평가사례 ■거래사례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범 례] ■ 본 건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사 진 용 지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본건 전경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07-8



본건 전경



본건 지상의 콘크리트 적치물